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-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
 - 광역 선거구 신설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증가한 청주시 2명 배정,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 15%이상 증가지역인 진천군 1명 배정
- 청주시 비례대표 의원 1명 증가
- 보은군 “가”선거구 인구상한 초과 해소를 위해, “다”선거구 의원정수 1명을 “가”로 이동, 삼승면을 “나”선거구로 이동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공직선거법(이하‘법’이라 한다.)」의 개정·시행(2022.4.20.)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.
- 충청북도 시·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법 제23조제1항 별표3에서 136명(현행 : 132명 → 변경 136명, 증 4명)으로 명시되어 있음.
- 충청북도 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광역 선거구 신설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증가한 청주시에 2명을 배정하고,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 15%이상 증가지역인 진천군 1명 배정하였음. 또한 청주시 비례대표 의원 1명이 증가하였으며 보은군 “가”선거구 인구상한 초과 해소를 위해, “다”선거구 의원정수 1명을 “가”로 이동, 삼승면을 “나”선거구로 이동하였음.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국회에서는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, 공포·시행하였음. 법에서는 부칙 제4조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법 위반은 아니나 국회 스스로 법 제24조의3 제5항에 규정된 선거구획정

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시·군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과 도의회에 법 시행일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것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